

KOREAN WOMEN'S DEVELOPMENT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무엇이 쟁점(issue)인가?

고보민 가톨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1. 서론: 국제통상 분야에서 성평등이 쟁점(issue)으로 떠오르는 배경

코로나 방역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던 2020년 8월, 세계의 모처에서는 캐나다, 뉴질랜 드, 칠레 3개국 간의 역사적인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협정문(the Global Trade and Gender Agreement or GTAGA)"이 체결되었다. 이들 국가들에도 그 당시 코로나 방역 이 전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였지만, 성평등적 관점으로는 OECD 최하위권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매우 낯선 주제인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관련 독립된 국제통상 규범이 전 세계 최초로 합의된 것이다. GTAGA는 여성의 무역 참여 확대 및 무역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현재 가입을 희망하는 타 국가들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다. 이 합의는 성평등에 대한 3개 서명국의 오랜 결의와 경험을 강조하고, '무역과 성평등' 차원에서 상호 소통하고 지원하는 것이 취지였다. 이 세 국가는 그동안 '무역과 성평등' 관련 국내적 조치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or FTA)과 같은 통상협정 상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이 국가들이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성평등 주제에 주목하는 것은 이 주제가 한 국가 내 기업, 지역사회 및 경제 전체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요소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3개국은 여성 들이 무역 과정에서 직면하는 성차별적 무역장벽과 여러 애로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 관련 정보를 쌓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GTAGA 협정은 회원국 내 여성 무역업 자에게는 더 많은 무역 이득의 기회를 창출시키고.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 확보의 계기가 되며, 여성 소비자들에게는 기존의 무역 이득에 더하여 체계적 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World Bank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2020).

현재 여성은 전 세계 무역기업 중 20%만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무역기업 여성 대표자 비율뿐만이 아니라 여성 정규직 비중도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다(UNCTAD. 2020). 현실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성차별적 비즈니스, 금융 및 투자 관행이 분명히 존재 하며, 따라서 성평등 정책적 관점에서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양성평등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모두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World Bank ITC, 2020). 이처럼 성평등 분야에서의 국가 간 통상정책 공조는 무역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현재 각국 내 대중적 인식과 정치적 리더십은 그 필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다. 무역을 포함한 국제통상 분야는 직장(유급 및 무급 모두)이나 근로 조건, 기업가 정신, 소비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자원 할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성에게 영향 을 미친다(Ko, 2020). 그러나 국제통상 차원에서 성별의 차이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검사하여 성별에 기초한 불평등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젠더분석적 접근이 부족하다. 또한 통상정책에서도 성주류화(gender-mainstream) 개념을 도입하 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익을 얻고 이들 간의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체계적이고 통합 적으로 진행시키는 전략도 아직은 거의 없다. 더 나아가 현재 통상 협상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 내 '무역과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전문 지식 또한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World Bank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2020).

1995년 WTO가 설립된 이후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무역과 성평등'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or WTO)는 아직 이 주제와 관련된 다자간 국제통상규범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the Buenos Aires declaration on trade and women's economic empowerment)'을 체결하였다. 이어 제네바 WTO 본부에서 2019년 3월에 '통상 협정에서의 젠더문제에 관한 WTO 워크숍'도 개최되었다. 이때 이른바 '무역과 성평등'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FTA 협정에 성평등 관점을 담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WTO, 2019). 한편 WTO 차원 말고 개별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무역과 성평등' 논의는 그 역사가 훨씬 길다. 1990년대에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WAS)'와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처음으로 '여성 및 발전'을 강조하면서, 고용 문제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이슈로 '무역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했다 (Monteiro, 2018). 2000년대에는 유립연합(EU)과 중앙 아메리카 공동체 사이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or RTA)이 협력과 노동 기준에 있어 성평등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모든 정책 결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제통상 규범에 있어 처음으로 기본 원칙이 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의 평균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관련 조항을 포함한 FTA의 숫자와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Ko, 2020). 본고에서는 우선 '무역과 성평등' 관련하여 주요국 간 통상협정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WTO, 세계은행(World Bank or WB),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 내 관련 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시사점을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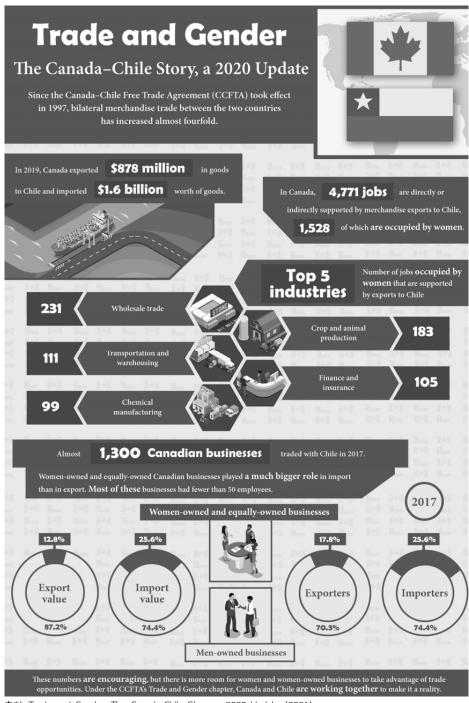
2. '무역과 성평등' 전 세계 주요 사례

가, 주요국 간 통상협정 사례

2010년대 후반,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의 평균 숫자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관련 조항을 포함한 FTA의 숫자와 비중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FTA 협정문 내에 '무역과 성평등' 독립 장(章, Chapter)을 가진 FTA의 수도 최소 5개로 늘어났다(Ko, 2020). 즉, 칠레-우루과이, 칠레-아르헨티나, 칠레-브라질, 캐나다-칠레, 캐나다-이스라엘 간에 각각 맺어진 FTA들이 그 사례이다. 이 중 칠레가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와 당사국이 되어 맺은 FTA 협정과, 캐나다가 칠레 및 이스라엘과 협상한 개정 FTA는 현재까지 가장 상세하 고 포괄적인 '무역과 성평등' 젠더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Monteiro, 2018). 각 FTA의 '무역과 성평등' 장(章)에는 FTA 회원국 간의 일반적 합의 내용, 협력 활동 및 제도적 준비 에 이르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통상 및 젠더 위원회 설립과 협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FTA는 무역 참여국들 사이의 정책 규범으로서 성평등 주제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여성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고 자유무역의 이익을 여성과 남성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성평등 관점을 접목한 국제통상협정은 무역 분야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 한다는 면에서 보다 더 공정한 경쟁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무역 분야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로이 인식하고, 여성들이 무역과 상업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성차별과 장벽을 제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Ko, 2020).

각 FTA의 '무역과 성평등' 장(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일반 조항, 국제 협약 조항, 협력 활동 조항, 제도적 장치 조항 등으로 나뉜다. 일반 조항에서는 경제 및 무역 문제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포괄적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 한다. 국제 협약 조항에서는 1979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같은 성차별에 반대하는 UN 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적 법률문서들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회원국 간에 재확인한다. 협력 활동 조항에서는 FTA 회원국들이 통상 및 젠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력 활동과 역량 구축을 수행할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조항에서는 합의된 협력 활동 수행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합의 내용의 운영을 검토하며,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FTA의 다른 장(章)들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를 설립, 운영한다. 즉, FTA 시행 과정에서 여성 무역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평등 기반의 분석 및 통계를 공유, 논의 또는 공동 개발한다. 하지만 2022년 3월 현재 '무역과성평등' 관련 독립된 장(章)을 포함한 FTA는 총 10개 미만이며, 이 분야 주요 선진국은 캐나다, 칠레, EU 등이다. 한편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3개국 간의 GTAGA는 무역과성평등 관련 FTA의 부속 장(章)이 아니라 독립된 무역규범으로는 세계 최초이다.

FTA 내에 '무역과 성평등' 장을 가진 사례 중 칠레 관련 총 4건(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및 캐나다 관련 총 3건(칠레, 이스라엘, GTAGA)등 총 7개를 분석한 결과, 우선 일반 조항 면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는 캐나다-칠레 FTA이다. 이 부분에서는 UN '2030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5호'를 상기하며, UN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준수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더해 및 ILO 협약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준수도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협력 조항에서는 GTAGA 협정문이 총 17개 협력활동을 나열하며 가장 광범위한 규범이었고, 특히 고위층에서 여성 역량 및 참여 구축 및 기술 향상 장려 및 무역 분야 양성평등 실현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 모범사례 및 표준 개발 등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 관련 조항에서는 위원회 및 접촉창구, 협의 및 분쟁해결제도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총 11개의 임무를 나열한 GTAGA가 가장 선진적인 FTA '무역과 성평등' 장(章)이었다. 한편 캐나다-칠레 FTA를 구체적으로 보면, 1997년 캐나다-칠레 자유무역협정(CCFTA)이 발 효된 이후 양국 간 상품 교역은 거의 4배 증가했다. 2019년 캐나다는 칠레에 8억 7,800만 달러를 수출했고 16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2019년 2월 발효된 CCFTA 개선 협정문에 '무역과 성평등' 장(章)이 포함된 이후, 캐나다에서는 칠레에 대한 상품 수출로 직·간접적 으로 4,771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중 1,528개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2017 년 약 1,300개의 캐나다 기업이 칠레와 무역했으며, 이 중 여성 기업인이 소유 또는 운영 하는 캐나다 기업은 수출보다 수입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했고 이들 업체 대부분은 50명 미만 기업이었다. 이 수치들은 FTA 체결 전보다는 고무적이지만 여성 기업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기업들이 무역 기회를 활용할 여지는 더 많다.



출처: Trade and Gender: The Canada-Chile Story, a 2020 Update (2021)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21046-eng.htm (검색일: 2022.03.01.)

[그림 1] 캐나다-칠레 FTA '무역과 성평등' 장(章) 체결 성평등 관점으로 본 무역

나. 국제기구 논의 사례

1979년 12월 18일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이후로, 젠더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관점을 넘어서, 통상과의 관련성 과 연계될 정도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발전해 왔다. UNCTAD, OECD, G20 및 APEC 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제기구 및 포럼은 통상과 성평등을 연계하여 다룰 수 있는 공동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다(UNCTAD, 2020; OECD, 2020a).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 구(APEC)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결의되었다(Frohman, 2020). 세계은행(WB) ITC, 국제노동기구(ILO) 및 UN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UN 산하 기관도 '무역과 성평등'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WB ITC, 2020). 특히 FAO의 경우, '세계 바나나 포럼'의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의 고용기회 증대, 여성의 역량강화, 성별 임금 격차 감소, 직업건강 및 안전 개선, 성희롱 및 성차별 폭력 해결 등 5대 중점 분야를 발굴하 기도 했다(WTO, 2019). WTO에서도 관련 다자간 통상규범은 아직 합의된 바 없지만,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 노스 아이레스 선언(the Buenos Aires declaration on trade and women's economic empowerment)'을 합의한 바 있고, 한국을 포함한 123개 WTO 회원국은 이 선언문에 참여하여 헌신적인 행사, 토론, 정보교환을 통해 무역과 여성의 역량 강화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WTO, 2019). 이를 계기로 회원국들은 무역이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특히 전자상 거래와 같은 기술 개발에 힘입어, 무역이 여성 고용과 경제 발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식했다(World Bank, 2020).

WTO 차원에서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에 대한 논의는 무역과 성평등 각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이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권리 신장을 위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WTO 차원에서 공동 실천을 모색하는 동시에 다자규범화하는 것이 목표이다(이주관·박지현·유새별, 2021; 〈표 1〉). 특히 제 11차 WTO 각료회의 시 공동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년 9월 '무역과 성평등' 비공식 작업 반이 출범하였다. 회원국들은 여성이 국제무역과 공급망 연결에 참여하는 데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와 구체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이주관·박지현·유새별, 2021). 이를 위해 무역과 여성 이슈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데 이터 수집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성인지 관점의 WTO 규범과 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WTO, 2022). 2021년 3월에는 '무역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 선언문'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WTO, 2022). 이 당시 한국

을 포함한 127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캐나다의 제안으로 '무역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 논의를 위한 워크 플랜에 합의하였으며, WTO 협정과 기능에 성평등(젠더)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각료회의 전까지는 구체적 성과물 도출을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 여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통상정책 유형 예시

통상전박(목표) 1. 양성명등목표 2. 여성기업기에게 유리한 쿼터 또는 우선권 3. 부문별 목표치 쿼터(농존경제개발) 4. 양성명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5. 임금맹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5. 임금맹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6. 계약 할당 시 상별에 따른 차별 금지법 7. 1세대 문제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 (WTO 하용가능 보조금 활용) 8. 여성농업인 교육 (WTO 하용가능 보조금 활용) 9.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위생 및 식물감역(SPS)' 기술개발 10. 식품안전 및 식량원교 제공 (내부 대책) 11. 개발도상국의 반곤 여성농기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총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리 혹은 용자 자금 12. 당업부문에 증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리 혹은 용자 자금 12. 당업부문에 여성하여 유선적으로 위한 일반 전략 기원 가급 후입 기간 부분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2. 농업부문에 성하는 여성을 위한 1인 전략 지원과 인센티브 13. 인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의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의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7. 서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인천이 원칙 기간 보험 시원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상업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지/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가열금지 일시 (모드 4) 19. 상업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지/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가열금지 일시 (모드 4) 2. 양성병등을 담당하는 각 부저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발범지 수입 기간 자유무역협정(FTD) 2. 양성병등을 구정하는 기준 22. 양성병을 구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기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당자 간 자유무역협정(FTD) 2.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기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당자 간 자유무역협정(FTD) 2. 여성의 존취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기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주상이는 이수를 본에 대한 자료 수집 24. 여러 장(후) 전체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5. 여성의 전체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5. 여성의 전체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대기 슬린소 수에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관형을 이루도록 법제한 2점으로 이루도록 법제한 2점으로 이루도록 법제한 2점으로 기관되었다는 무리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20. 기업이 어리의 작곡적인 점으를 바라하는 및 반하도로 의무함 보다는 대한 작료 교략으로 유도 (노동시장 20. 기업이 어리의 작품에 점으를 보상하고 맺었하는로 의무함 2점으로 유도 (노동시장 20. 기업이 어리의 작업이를 보상하고 맺었하는로 의무로 발명으로 유도 (노동시장 20. 기업이 어리의 작품이 점으를 보상하고 맺었하는로 필급받으로 유도 (노동시장으로 필급받으로 유도 시간되었다면 20. 이사회의 점을 보상하고 맺었하는로 필급받으로 유도 (노동시장으로 필급받으로 기관되었다면 20. 이사회의 전략적인 점을 보상하고 맺었하는로 필급받으로 유도 (노동시장으로 필급받으로 기관되었다면 2점으로 유도 인상되었다면 20. 이사회의 전략적인 전략을 보상하고 맺었하는로 필급받으로 기관되었다면 2점으로	분야	통상정책 유형
정부 조달 4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5. 임금평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6. 계약 할당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법 7. 젠더 문제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8. 여성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9. 국제시장 전입을 위한 '위생 및 식물검역(SPS)' 기술개발 10. 식품안전 및 사랑인질 제공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10. 식품안전 및 사랑인질 위한 '위생 및 식물검역(SPS)' 기술개발 11. 개발도상국의 빈근 여성동기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용자 자금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용자 자금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용자 자금 13.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단을 위한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단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건소화된 사업하가 절차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기간 사업하는 신청시 기업의 성별 구성 기관 및 의사결정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가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영차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좋)에서 팬한 자료 수집 25. 여성의 경제 전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기이 기술원조 수해자의 성별 문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기이 기술원조 수해자의 성별 문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단력적 노동법 조심하는 기단 정복 전하는 이용로 불리하는 인부모로 법제화 조단하는 이상하는 기상할 근목이 이상에 미지는 영향을 26.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7. 성계에 구함에 어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단력적 노동법 26.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단력적 도망법 26. 나도시장 조징 기단 상별 교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6. 아선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7.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6. 아선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7. 성계에 수점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6. 아선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6. 아선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26. 아선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임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사장 조정)	통상전략(목표)	1. 양성평등목표
정부 조달 4. 양성평등당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5. 임금평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6. 계약 할당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법 7. 젠더 문제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8. 여성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9.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위생 및 식물검역(SPS)' 기술개발 10. 식품안전 및 식량원조 제공 (내부 대책) 11. 개발도상국의 빈곤 여성동가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중시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용자 자금 13. 민간부문의 여성 교육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미치는 조지 -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인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인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기를 위하여 간소화된 시업하가 절차 17. 사업하기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엄국인 근로사/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점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석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엄국인 근로사/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점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석 (모드 4)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H) 24. 여러 장(휴)에서 센터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례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교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촉진하는 기타 정책	정부 조달	2. 여성기업가에게 유리한 쿼터 또는 우선권
5. 임금평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6. 계약 할당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법 7. 젠더 문제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8. 여성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9. 국제시장 진압을 위한 '위생 및 시물검역(SPS)' 기술개발 10. 식품안전 및 식량원조 제공 (내부 대책) 11. 개발도상국의 빈곤 여성농가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종시하는 어성을 위한 지원 자리 혹은 용자 자금 기원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3.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 여보시스에 대한 지원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관이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입 및 수출 인하기에 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16. 여성기업기를 위하여 간소화된 사업하가 절차 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 명.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기관 및 의사결정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표운 및 기술 규정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가관 발금지 임식 (모드 4) 양서 등을 규정하는 기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당의 성명등을 규정하는 기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 24. 여러 장(후)에서 전터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 24. 여러 장(후)에서 전터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 24. 여러 장(후)에서 전터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 24. 여러 장(후)에서 전년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양자 가 자유무역합성(FT) 26. WTO 기술원조 수례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td>3. 부문별 목표치 쿼터(농촌경제개발)</td>		3. 부문별 목표치 쿼터(농촌경제개발)
6. 계약 할당 시 성발에 따른 차별 금지법 기. 젠더 문제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1. 전더 문제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2.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위생 및 식물검역(SPS)' 기술개발 10. 식품안전 및 식량원조 제공 (내부 대책) 11. 개발도상국의 빈곤 여성농가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종시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용자 자금 12. 농업부문에 종시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용자 자금 13.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의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의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간소화된 사업하가 절차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발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19. 성발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19. 학교 및 이상 병등을 담당하는 기준 무역 원조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 24. 여러 장(화)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기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한 42. 성의 수출 분야에서 일발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4.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유업 유성		5. 임금평등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할당
용업 원 여성동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9.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위생 및 식물검역(SPS)' 기술개발 10. 식품안전 및 식량원조 제공 (내부 대책) 11. 개발도상국의 빈곤 여성동가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용자 자금 13.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미치는 조치 -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기를 위하여 간소화된 시업하가 절차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기관 및 의사결정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표준 및 기술 규정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무역 원조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기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H)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교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촉진하는 기타 정책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6. 계약 할당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법
용업	농업	7. 젠더 문제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10. 식품안전 및 식량원조 제공 (내부 대책) 11. 개발도상국의 빈곤 여성농가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융자 자금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간소회된 사업하가 절차 인센티브 17. 사업적인 연향을 미치는 조치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열병리 원차 (모드 4) 19. 성병명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열금지 원치 (모드 4) 20. 양성명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차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42.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전략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전략으로 무료 전략으로 유료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프로그램으로 유료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전략으로 프로그램으로 유료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전략으로 무료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전략으로 무료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전략으로 구요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전략으로 구요 (노동시장 조성) 29. 이성이 관료 전략으로 구요 (소문시장 조점 전략으로 구		8. 여성농업인 교육 (WTO 허용가능 보조금 활용)
10. 식품안선 및 식당원소 제공 (대부 대책) 11. 개발도상국의 빈곤 여성동가에 보조금 투입 12. 농업부문에 종시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융자 자금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9.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위생 및 식물검역(SPS)' 기술개발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융자 자금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융자 자금 13.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간소화된 사업하가 절차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 별금지 원칙 (모드 4) 19. 성병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 별금지 원칙 (모드 4)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H) 24. 여러 장(후)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10. 식품안전 및 식량원조 제공 (내부 대책)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3.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간소화된 사업하가 절차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19. 성병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H)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10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11. 개발도상국의 빈곤 여성농가에 보조금 투입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6.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간소화된 사업허가 절차 17. 사업허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19. 성병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12.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자금 혹은 융자 자금
지치는 조치	미치는 조치	13. 민간부문의 여성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수입 및 수출 인하가에 지점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별금지 원칙 (모드 4)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한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14.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지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17. 사업하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 별금지 원칙 (모드 4) 기관 및 의사결정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촉진하는 기타 정책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15. 수출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16. 여성기업가를 위하여 간소화된 사업허가 절차
서비스 19.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직원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 차 별금지 원칙 (모드 4)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17. 사업허가 신청 시 기업의 성별 구성
변금지 원칙 (모드 4) 기관 및 의사결정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무역 원조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서비스	18. 여성의 노동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의 시장 접근 개방 (모드 4)
田군 및 기술 규정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6. 생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한 및 기술 규정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기관 및 의사결정	20.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정부기관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참여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R)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표준 및 기술 규정	21. 기술규정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부기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That 수집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22. 양성평등을 규정하는 기준
자료 수집 무역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촉진하는 기타 정책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무역 원조	23.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위한 통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상 역량 구축 및 지원
지료 수집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24. 여러 장(章)에서 젠더 조항 명시(노동, 차별 방지 등)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촉진하는 기타 정책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자료 수집	25.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자료 수집
무역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26. WTO 기술원조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대한 자료 수집
*진하는 기타 정책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1 1 1 10 11 1 12 002	27.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하는 탄력적 노동법
기타 정책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28. 국유기업은 이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화
	, _ , _	29. 여성이 수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도 (노동시장 조정)
		30. 기업이 여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

출처: WTO(2019)을 바탕으로 저자 번역

3.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가. 국제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현재 체결하고자 하는 또는 개선협상을 진행하려는 FTA에 있어 한국의 여성 기업가들이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협력과 기술 지원을 증대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FTA 상대국과 합의하는 데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WTO, OECD, G20, APEC 등에서 '무역과 성평등'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도입 및 실행 등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회원국이며, 현재는 정책 실행 관련 인식과 제도적 인프 라도 부족하다(Ko, 2020).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칠레 FTA 개선협상 내 '무역과 성평등' 장(章) 협상은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다. 향후 이 주제 관련하여 한국보 다 선진국인 캐나다. EU, 뉴질랜드 등과의 FTA 개선협상에도 칠레 사례처럼 '무역과 성평 등' 장(章) 포함 등을 제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FTA 상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들은 성별 및 동일 임금에 기초한 차별 금지 및 핵심 노동 표준에 대한 ILO 협약과 같은 기존 약속을 준수하도록 강화하며, 국내외 정책 공조에 있어 성인지 표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국은 FTA와 WTO 같은 전통적인 국제통상 체제 내 논의는 물론이고, OECD, UNCTAD, G20 및 APEC 내 관련 주제의 국제적 논의 에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역 분야에서 한국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정책 설계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Ko, 2020).

나. 국내적

국내적으로 한국은 우선 '무역과 성평등'에 대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여 무역이 통념처럼 성중립적이지 않다는 전제 하에 통상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고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통상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고용 기회의 차이, 임금 및 기타 직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현재세계 10대 무역 강국인 한국은 무역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 참여에 있어 여성들이 인식하는 애로사항 및 각종 성차별적 무역장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OECD, 2021b). 무역회사의 여성 취업률, 여성 무역가의성공과 혁신활동 국내 사례 분석, 한국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체제 심층 분석 등도 필요

하다. 또한 '무역과 성평등' 분야 FTA 내 국가 간 협력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성별분 리통계 수집, 지표 사용, 무역 관련 젠더 중점 통계 분석에 쓰이는 방법과 절차 공유'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분야별 여성참여비중 분석, 한국 상장기업의 여성관련 통계 분 석(성별 신입 비율 및 평균연봉, 직급별 성비, 임원성비, 성별 연봉 중간값 등) 등을 추진해 야 한다. 한편 '무역과 성평등' 논의 선진국인 GTAGA 3개국 내 성평등 전담 부처의 명칭 과 조직 관련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국가 내 성평등 전담 부처는 한국과 같이 여성, 가족, 청소년을 동시에 다루는 '무늬만 성평등 부처'가 아니라, 성평등에 실질적으로 집중 할 수 있는 '양성평등부'를 부처명으로 가지고 있고, 통상 전담 부처의 명칭과 조직에 있어 서 산업진흥형이 아니라 외교통상형 형태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보다는 오히려 양성평등 임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무역과 성평등' 관련 협상에서 현재 통상 주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주제의 주무부처가 되고, 여성가족부는 주제를 관장하는 보조부처가 돼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무역과 성평등'에 대한 국내적 변화가 있을 경우, 노동자인 여성은 무역 분야 취업 시장 진입, 참여 및 적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업가인 여성은 무역을 위한 자원(재무, 인력, 시장정보)과 네트워크, 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인 여성은 무역 참여 소비자를 위한 권익 프로그램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주관·박지현·유새별 (2021).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1(6)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 9424&act=view (검색일: 2022.01.01.)
- Ko, B.M. (2020). "Analysis of Gender Chapters in Five Free Trade Agreements and Its Lessons for Korea," Journal of Korea Trade, 24(6), 82–100.
- Monteiro, J. (2018), "Gender-related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Staff Working Paper,
- ERSD-2018-15)," Geneva, Switzerland: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in the WTO. 1-36.
- OECD (2021a). "Trade and Gender: A Framework of Analysis" OECD Trade Policy Paper https://www.oecd.org/publications/trade-and-gender-6db59d80-en.htm (검색 일: 2022.03.01.)
- OECD (2021b). "Trade and Gender", Trade Policy Brief, https://www.oecd.org/trade/topics/trade-and-gender/documents/oecd-trade-and-gender.pdf (검색일: 2022.03.01.)
- Trade and Gender: The Canada-Chile Story, a 2020 Update (2021)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627-m/11-627-m2021046-eng.htm
 (검색일: 2022.03.01.)
- True, J. (2009), "Trading-in gender equality: Gendered meanings in EU trade policy". In E. Lombardo, P. Meier and M. Verloo (Eds.), The Discursive Politics of Gender Equality, New York, NY: Routledge, 121-137.
- UNCTAD (2020), "Gender and Trade- Assessing the Impact of Trade Agreements on Gender Equality: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UN-Women/2020/1), "Geneva, Switzerland: Author, 1-24.
- World Bank ITC (2020), "Mainstreaming Gender in Free Trade Agreements (SheTrades)," Washington, DC: World Bank, 1–37.
- World Bank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2020). "Women and Trade: The Role of Trade in Promoting Gendr Equality"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womenand trade_e/webinar_wom_trd_151020_e.htm (검색일: 2022.03.01.)
- WTO (2019) "Trade Policies Support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Trends in WTO Members", Staff Working Paper ERSD-2019-07. 1-10.
- WTO (2022) "Woman and Trad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womenandtrade_e/womenandtrade_e.htm (검색일: 2022.01.01.)